

수수료 없는 환급금,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안내합니다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영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에게 자금 유동성을 제공하고, 더욱 편리한 납세서비스로 보답하기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국세청은 지난해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티몬 피해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 비과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실물경제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세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올해에도 영세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와 함께 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소득자에게도 환급금 안내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였던 납세자들은 오늘(3.11.)부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정확한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풍성한 가정의 달을 위해, 3.31.(화)까지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된 환급금은 4월 말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 * 4.1.(수) 이후에 신청된 환급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①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소득세 환급금을 직접 안내합니다.

- 국세청은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아 소득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 *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안내를 놓치는 등으로 인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①인적용역 소득자와 연말정산을 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②연금·기타소득자
- 안내대상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①인적용역 소득자들과
- 소득이 크지 않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②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③근로소득자들입니다.
- '25년에도 이와 같은 국세청의 환급금 안내를 통해 136만명의 납세자가 총 1,395억원의 소득세를 환급받은 바 있습니다.

납세자의 피드백

“저는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세금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 인터넷에 하도 세금 환급 광고가 많아 설마 했는데, 홈택스에 들어가 보니 정말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더라고요. 국세청이 아니었다면 모르고 넘어갔을 세금인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덕분에 오래된 마이크를 새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국민이 세금에 대해 일일이 신경쓰지 않게 해주는 국세청, 고맙습니다!”

② 올해부터 소득세 환급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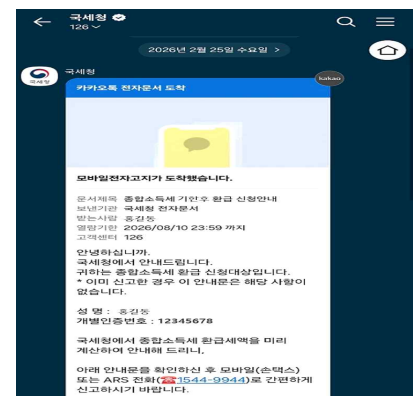
-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는 '22년부터 매년 1회 시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연 2회(3월, 9월) 안내하고 환급해드립니다.
- 이번에는 안내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에 환급금을 안내받고도 미신청한 납세자뿐 아니라, 올해 새로 안내하는 근로·기타소득자 12만 명을 더한 총 111만 명(총 환급금 1,409억 원)에게 환급금을 안내합니다.

Ⅰ 소득세 환급 안내 대상 유형별 인원 Ⅰ

기존에 안내한 납세자 99만 명 (1,338억 원) - 인적용역 소득자 85만 명 (1,214억 원) - 근로소득자 12만 명 (98억 원) - 연금·기타소득자 2만 명 (26억 원)	올해 새로 안내하는 납세자 12만 명 (71억 원) - 근로·기타소득자 12만 명 (71억 원)
---	--

- 안내 방법 또한 추가하여 모바일뿐만 아니라 국민비서(네이버, 카카오 등)에서도 납세자들이 환급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겠습니다.

Ⅰ 모바일 안내문과 국민비서 안내 Ⅰ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네이버, 토스 등) 안내
	

Ⅲ 소득세 환급금은 홈택스, 손택스, ARS로 신청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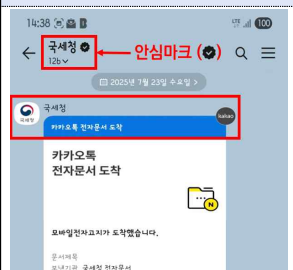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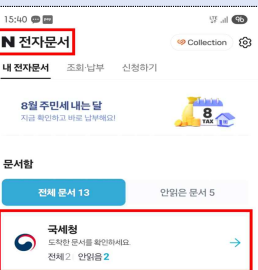
- 국세청으로부터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를 통해 환급을 안내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은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따로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 본인인증 및 환급계좌 입력만 하면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참고1**
-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ARS 신청 시스템(☎1544-9944)을 통해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2**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화면에서 본인인증 후에 환급세액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3**
-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3월 한달동안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Ⅳ 국세청을 통한 환급금 신청은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 국세청의 환급금 안내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세액을 정교하게 계산해 안내하기 때문에 소득세 계산 오류에 따른 가산세 걱정이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없으며, 수수료 부담도 없습니다.
- 국세청을 통한 환급신청이 아닌 경우 공제·감면 등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 환급이 신청될 수 있고 이 경우 환급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환급 안내문에 있는 국세청 안심마크(🔒)와 네이버 앱의 ‘국세청 전용 문서함’에서 안내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사칭 스미싱이나 전자금융범죄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Ⅰ 모바일 안내문 진위여부 확인 방법 Ⅰ

카카오톡	SMS	네이버
		

※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입금도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함께 해결책을 찾는 동반자로서 바쁜 생업 탓에 미처 챙기지 못했던 세금문제를 영세납세자보다 먼저 고민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새로운 세정지원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참고 1 환급 신청 방법_손택스

- (바로가기) ①모바일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손택스로 바로 이동, ②본인인증을 거쳐 ③최대 5개년분 환급세액을 한번에 확인한 후 ④계좌번호를 확인·수정입력하고 ⑤[이대로 신고하기]를 눌러 한꺼번에 신청
- (직접 접속) 손택스 앱에 직접 접속하여 로그인 후 맞춤형 추천 메뉴의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를 눌러 환급 신청

담당 부서 <총괄>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책임자	과 장 손재령 (044-204-3241)
		담당자	사무관 김주강 (044-204-3252)
<협조>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웅선 (044-204-2551)
		담당자	사무관 문숙자 (044-204-2572)
<협조>	정보화관리관 빅데이터센터	책임자	과 장 우연희 (044-204-4501)
		담당자	사무관 김경아 (044-204-4512)
<협조>	정보화관리관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책임자	과 장 전승한 (044-204-4651)
		담당자	사무관 김태형 (044-204-4672)

1) 손택스 로그인

* 공동·간편·금융인증서, 아이디, 지문인증 중 선택

2)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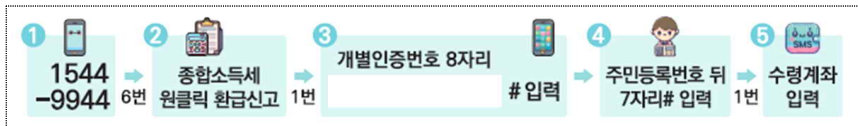
3) 신고서 제출

①환급계좌 연락처 및 ②환급 세액 확인 → ③신고내용 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 여부 체크 → ④[이대로 신고하기] 클릭

참고 2 환급 신청 방법_ARS 전화(1544-9944)

- (ARS 전화 신청) 안내받은 금액 그대로 일괄 환급신청하는 경우, ①모바일 안내문에서 'ARS 전화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ARS(☎1544-9944) 연결, 안내문에 기재된 ②개별인증번호와 ③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 ※ ARS 전화 신고 후 환급 신고서가 정상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됨

ARS(1544-9944) 환급신청 방법



* ARS 전화 신고 메뉴명은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임

참고 3 환급 신청 방법_홈택스

- (홈택스 신청) PC에서 홈택스 접속하고,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최대 5개년분 환급세액을 한번에 확인한 후 계좌번호를 확인·수정입력하고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한꺼번에 신청

(Step 1) 홈택스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하나은행, 농협, 신한카드, 카카오페이, 우리은행, 드림시큐리티), 아이디, 생체인증 중 선택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홈택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PC보호와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합니다.

☐ PC방화벽 프로그램 이용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이용 [사용](#)

공동·금융 인증

간편 인증
(원간인증서)

모바일신분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얼굴·지문) 인증

비회원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Step 2)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바로가기 클릭

국세청 홈택스 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계산서·영수증·카드 > 증명·등록·신청 > 세금신고 > 납부·고지·환급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상담·불복·제보 >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알림

카드를 클릭하면 '국세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나의 소득

나의 현금영수증

나의 민원

☰ 알림 추천하는 메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바로가기 >

납부

국세납부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바로가기 >

신고서 조회(사제부속서류)

전자신고
결과 조회

바로가기 >

인원명단관리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바로가기 >

(Step 3) ① 환급계좌 연락처 확인 ⇨ ②, ③ 종합소득세 환급세액 확인 ⇨ ④ 「신고 내용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체크 ⇨ ⑤ 「이대로 신고하기」 클릭

님의 환급 예상 금액은 **138,390원** 이예요.

환급계좌

연락처 010-1111-1111

①

환급계좌, 연락처 수정하기

● 환급계좌 또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환급계좌와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 나의 소득금액 및 환급세액

▲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금액을 확인하시고, 사실과 다른 경우 수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분리과세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종합합산 신고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에 소득금액이 동보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ARS 개별인증번호 : 87000101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소득금액 0원	소득금액 763,030원	소득금액 120,000원	소득금액 15,283원	소득금액 452,100원
환급예상세액 -	환급예상세액 82,960원	환급예상세액 24,000원	환급예상세액 1,430원	환급예상세액 30,000원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대상 [설기 ^](#)

선택한 신고서의 환급예상세액은 **138,390원** 입니다. (단위: 원)

귀속연도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금액	세액공제·감면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신고상태	상세내역	신고하면 이동 (신고서 수정)
☒ 2023	763,030	1,500,000	0	82,960	82,960	-	보기	이동
☒ 2022	120,000	1,500,000	70,000	24,000	24,000	-	보기	이동
☒ 2021	15,283	1,500,000	0	1,430	1,430	-	보기	이동
☒ 2020	452,100	1,500,000	0	30,000	30,000	-	보기	이동

※ 신고서를 수정하신 경우 위 자료와 실제 환급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 확인 및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 제공동의

신고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④

☐ 이에 동의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의 전화번호, 환급제작번호를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위택스)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④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⑤

이대로 신고하기

참고 4 소득세 기한후 환급금 안내 관련 주요 Q&A

1

안내받은 환급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내받은 환급금은 연중 언제라도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20년 귀속은 5월말까지 환급신고 가능하며, 이후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환급 불가

2

지방소득세도 환급되나요?

- 네, 지방소득세도 환급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으며,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자동 환급됩니다.

3

ARS 전화로 귀속연도별 개별신청은 못하나요?

- 네. ARS 전화는 소득세 환급금 안내대상 연도 전체를 수정 없이 일괄로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환급대상인지 환급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ARS 전화로도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 ARS(☎1544-9944) ▶ 6번(종합소득세) ▶ 1번
- 또한, 126 국세상담전화나 세무서 대표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126(국세상담센터) 전화 ▶ 8번 ▶ 1번 ▶ 본인인증

5

환급신청한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아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홈택스)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ARS(☎1544-9944) ▶ 6번(종합소득세) ▶ 2번(신고내역 확인)